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986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송재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784호)과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840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및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자연환경보전 및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함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규정함(안 제4장)

다.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라.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26조)

마. 생태계서비스지불제약을 규정함(안 제27조)

바.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을 규정함(안 제28조)

사. 자연환경보전단체 지원 활동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9조)

아.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 기본법」”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 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자연환경은 법 제3조 각 호 및”을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은 법 제3조 각 호와”로, “제3항까지”를 “제3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연환경보전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연환경보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연환경의 보전”을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자연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를 “(시민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환경보전”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4항”을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으로, “수립하되, 시민·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민·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리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 한다)”를 “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한다.

제31조 앞에 “제5장 자연자산의 관리”를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6장 시민참여”를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제41조로 하고, 제34조를 제37조로 하며, 제31조를 제34조로 한다.

제38조를 제42조로 하고, 제35조를 제38조로 하며, 제32조를 제35조로 한다.

제39조를 제43조로 하고, 제36조를 제39조로 하며, 제33조를 제36조로 하고,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서울특별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민·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제29조 앞에 “제5장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삽입한다.

제34조 앞에 “제6장 자연자산의 관리”를 삽입한다.

제38조 앞에 “제7장 시민참여”를 삽입한다.

제39조(중전의 제36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표창)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3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연환경보전법</u>」 및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자연환경보전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환경정책기본법</u>」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u>자연환경은 법 제3조 각 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자연환경보전법</u>」,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 ----- ----- ----- -----.</p>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환경정책기본법</u>」, 「<u>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p> <p>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u>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은 법 제3조 각 호와 -----</u></p>

를」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 등을 교류·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법인·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생략)

②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 제3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
----- 관련 -----
-----.

④ -----
-----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⑤ -----
-----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제5조(시민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제6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시민·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 수립하고 이를 시행-----
--.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민·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신 설>

<신 설>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등) ① (생략)

② 법 제24조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4장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신 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제26조(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서울특별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 주의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민·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 설>

제2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신 설>

제26조 ~ 제30조 (생 략)

제5장 자연자산의 관리

<신 설>

제31조 ~ 제34조 (생 략)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제5장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

제29조 ~ 제33조 (현행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6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34조 ~ 제37조 (현행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와 같음)

제6장 시민참여

<신 설>

제35조 (생 략)

제36조(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제37조 ~ 제38조 (생 략)

제7장 보칙

<신 설>

제39조 (생 략)

<삭 제>

제7장 시민참여

제38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제39조(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표창)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1조 ~ 제42조 (현행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음)

<삭 제>

제8장 보칙

제43조 (현행 제39조와 같음)